2026
공고 제 - 120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05일

향남읍장 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최 *인	최 *인 1972-10-29	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한절이1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11-05
송 *균	송 *균 1971-12-07	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상신하길로176번가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11-05